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없음
6.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: 구성하지 않았음.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8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번호	71
------	----

2002년 12월 26일
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2년 11월 4일, 서울특별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2년 11월 6일

다. 상정일자 : 2002년 12월 26일

(제13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)

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강창구 건설국장)

- 서울시가 일부사업을 공단에 위탁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거 위탁업무마다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있으며
- 자치구 등과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공단이 대행할 경우에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의회의 통제가 가능하므로 시장이 공단의 대행사업승인시 의회의 사전의결을 또다시 받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.

3. 검토의견(전문위원 안석수)

-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의해 삭제하고자 하는 “시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위탁자의 사무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 대행을 승인하기 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” 하고 있는 관련규정은
 - 지난 97년 6월 제95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시, 당시 상정되어 있던 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면서 보다 합리적인 공단 업무의 운영을 위해서는 새로운 대행사업 수행을 시장이 승인하기에 앞서 그 타당성 등에 대한 시의회 차원에서의 사전 검토와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됨에 따라
 - 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 수행 전 의회 승인을 득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우리 의회가 의결함으로써 도입·시행된 것임.
- 그동안 공단 대행사무에 대한 시의회 사전 의결제도는
 - 서울시 자체사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경우 “지방자치단체의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단체 등에 위탁할 때에는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도록 규정”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95조(사무의 위임 등) 제2항 및 제3항 등에 따라 그 근거규정 마련을 위한 조례 등의 제정시 우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 있어, 본 조례에 의한 시의회 승인은 사실상 중복된 것으로 조정되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자주 지적되어 왔으며
 - 그러한 측면에서 동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임.
- 다만, 그와 같은 시 자체사무를 제외한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 관련 사무 등의 시설관리공단 대행까지도 시의회 사전의결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
 - 그 위탁사무의 규모 및 성격 등에 따라 공단 조직과 인력 운영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

- 그 타당성 등에 대한 시의회 차원에서의 계속적인 검토와 검증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 5. 토론요지 : 없음
 6.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: 구성하지 않았음.
 7. 수정안의 요지 :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골자(별첨)
 8. 심사결과 : 수정안 가결(재적의원 14명 전원일치 의결)
 9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 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-

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운영자가 사망한 때(배우자 승계시 제외)

제11조제1항제2호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2000년 1월 1일 이후에 교체 정비한 시설물의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 가액의 70/1000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(적용례)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거나 갱신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안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시의회"라 한다)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지방자치법 제95조제2항 및 제3항 등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득한 사항이나, 이미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업영역에서의 추가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시의회"라 한다)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지방자치법 제95조제2항 및 제3항 등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득한 사항이나, 이미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업영역에서의 추가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8조제3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